

공 고

2011년 11월 30일 시행 예정인 'KT 노동조합
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거'는 수원지방법원 성남
지원이 2011년 11월 28일자 가처분 결정으로 선
거관리규정 제 12조에 명시된 '입후보 등록절차
공고' 누락을 사유로 선거증지를 명령함에 따라
증지됨을 공고합니다.

2011. 11. 29

KT 노동조합 위원장

